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상구 의원 (대표) 발의 )

의안 번호	683
----------	-----

발의년월일 : 2019년 5월 24일

발 의 자 : 박상구 의원 (1명)

찬 성 자 : 이석주, 이승미, 장상기,  
이정인, 전병주, 정진철,  
김재형, 강대호, 정재웅,  
이경선, 김기덕, 봉양순,  
신정호 의원 (13명)

##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역세권의 범위를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승강장의 경계는 시민들이 알기 어렵고 승강장의 형태에 따라 실제 생활권과 상이하게 설정되는 등 역세권의 개념과 실제 범위가 달리 적용되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현행 역세권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에서 시장이 해당 역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에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역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을 “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역세권”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지하철,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u>&lt;신 설&gt;</u></p> <p>2. “청년주택”이란 <u>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p> <p>3.~ 6. (생 략)</p>	<p>제2조(정의) -----.</p> <p>1. -----.</p> <p>-----. <u>다만,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에서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역과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2. “청년주택”이란 <u>시장</u>, 서울주택도시공사 또는 -----.</p> <p>3.~ 6. (현행과 같음)</p>